

재가서비스의 안전성(Safety)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중증 장애인의 학대(Mistreatment) 경험을 중심으로 -

김동기*, 박수지**

본 연구는 중증 장애인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서 경험한 학대와 학대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학대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이용자 특성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서비스 이용 요인, 그리고 공급 특성으로 활동보조인 요인, 전담인력요인, 기관요인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는 분석 자료로 보건복지부가 2012년 실시한 활동지원제도 실태조사를 활용하였다. 이 데이터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1급 등록 장애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전국 91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수집되었다. 분석 결과 중증 장애인의 학대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자 특성으로 연령, 학력, 우울, 장애유형, 서비스 이용시간 그리고 공급 특성으로 서비스 제공자인 활동보조인의 성별, 서비스 제공 태도, 기관이 긴급한 경우에 행하는 적절한 대응의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정기적인 기관 모니터링, 기관의 보수교육 강화, 서비스 단가의 개선, 기관 전담인력의 수적기준 제시의 필요성 등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중증 장애인, 학대경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안전성

1. 서론

최근 우리 사회에서 폭력과 관련된 강력범죄의 증가와 ‘묻지마 범죄’의 발생으로 일반인들도 대인관계에서 불안을 의식할 정도가 되었다. 최근 몇 년간 전체 범죄의 수는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 학대와 관련된 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3). 이는 사회구성원에 대한 불신과 삶의 불안이 증가하는 우리사회의 우울한 단면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전반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우리사회의 총체적인 노력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으며, 안전한 개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각 분야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사회의 복지욕구에 맞춰 확대되고 있는 재가서비스의 안전성(safety)에 대해 탐색적

* 제1저자, ** 교신저자.

인 연구를 시도하였다. 2007년 전자바우처 사업의 도입을 계기로 사회적 취약계층인 아동, 장애인, 노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재가서비스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에서 제공되는 시설서비스의 내용과 전달방식이 주로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과 달리, 전자바우처사업으로 운용되는 재가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이용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의 일방적인 관계가 개선되고 시설서비스에서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의 비수평적 관계에서 비롯되었던 문제점들, 예를 들어 학대, 방임 등의 문제점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부여한 전자바우처 카드를 갖고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한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취약한 자가 안전한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독립된 공간인 '자택'에서 일대일로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학대의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Okta & Tompkins, 2004), 사회관계와 대처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에게 지급된 바우처 사용권이 온전히 이용자의 권익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현장에서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자들의 바우처 사용을 악용한 일부 서비스 기관의 부정행위들이 보고되고 있다(유한옥, 2006; 배화숙, 2007).

한편 현재 전자바우처사업으로 운용되고 있는 재가서비스의 안전성이나 학대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2007년 전자바우처사업이 도입되어 그 동안 사업이 제도적으로 안착되는데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구상하거나 긍정적인 사업성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연세대사회복지연구소, 2008; 이익섭 외, 2009; 송재숙·정종화, 2009; 김경미·김동기, 2010). 그러나 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전자바우처사업으로 운용되는 재가서비스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연구 또한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

재가서비스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영국의 '서비스 품질(quality) 관리 기구(Commission of Quality Control: CQC)'는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가 있다. CQC는 국가가 보장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관리, 감독하기 위해 중앙차원에 구축한 조직이다(CQC, 2011). 이 조직은 특히 생활시설이나 자택과 같이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안전성(safety)을 보장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CQC, 2011).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서비스 품질관리 조직의 구축을 논의 중이다(보건복지부, 2012). 이러한 조직의 설립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라도 재가서비스의 안전성에 연구와 현황과약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바우처사업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현황을 이용자의 학대경험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재가서비스 안전성에 대한 정기적인 감독과 예방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을 환기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기존의 학대에 대한 연구를 보면 학대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중심으로 개인적인 특성과 개인 주변의 환경적인 요소를 동시에 분석하고 있다(권중돈, 2004; 한인영 외, 2007; 여진주, 2008; 김유리, 2011). 이는 학대를 발생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심리정서적 요인뿐만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주변의 환경요인 즉 개인이 속한 조직의 요인, 지역사회의 요인 등 또한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Williams, *et. al.*, 2007).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 또한 중증 장애인이 재가서비스에서 경험한 학대를 분석함에 있어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의 개인적인 특성 이외에 기관의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중증 장애인의 학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이용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용한 서비스의 특성, 서비스 공급특성으로 서비스 제공자인 활동보조인의 특성, 전담인력의 특성, 기관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중증장애인의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실천적, 정책적 대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는 중증장애인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 특성(인구사회학적 특성, 서비스 이용의 특성)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학대경험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공급의 특성(서비스 제공자로서 활동보조인의 특성, 기관 내 전담인력의 특성, 기관 고유의 특성)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학대경험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학대에 대한 논의

형법 제274조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학대의 개념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법 제도 안에서 학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제2조를 살펴보면 학대는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우리나라 법 제도 안에서 학대의 범위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인 폭력과 가혹행위 그리고 보호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으로 제시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비교하여 기존 연구에서 학대(mistreatment)의 범위는 신체적, 심리적, 언어적, 성적인 학대(abuse)와 유기 및 방임 그리고 물질적, 재정적 착취까지 좀 더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Kleinschmidt, 1997). 즉 학대는 ‘모든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학대 피해자에게 심리적 그리고 신체적 해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일회적 또는 반복적이고 부적절한 행동’ 전체를 의미하고 있다(이은희, 2004). 이와 관련하여 광범위한 학대의 범위를 연구의 목적에 맞게 신체적, 심리적(언어적 학대 포함), 성적, 재정적 학대로 구성되는 협의의 범위와 이 세 가지 영역에 방임(자기방임 포함)과 유기를

포함하는 광의의 학대로 구분하기도 한다(김미혜, 2001; 권중돈, 2005). 이럴 경우 방임과 유기를 포함하는 학대의 범위는 단순히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위해를 가한다는 소극적인 해석을 넘어 개인의 인권 보호를 전제로 하는 적극적인 해석으로 보아 광의의 개념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연구의 경우 학대의 범위에 추가적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경우를 포함하기도 한다(Cambridge, 1999). 한편 포괄적인 학대의 범위와 관련하여 학대에 대한 연구를 대상별로 살펴보면 아동학대에 대한 연구는 학대의 유형을 신체적, 성적인 학대(abuse), 유기/방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노인, 여성 등의 성인학대에 대한 연구는 추가적으로 여기에 심리적(언어적 학대 포함) 학대와 재정적인 학대를 포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권중돈, 2004; 이경은 외, 2009).

본 연구에서는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아동 및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신체적, 성적인 학대, 유기/방임과 더불어 심리적(언어적 학대 포함), 재정적인 학대를 학대의 유형으로 보고자 한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인력의 가이드라인 무시에 대한 부분도 학대의 범위에 포함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있지만 아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위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없는 현실에서 이를 학대의 범주로 다룰 수 없어 제외하였다. 결국 본 연구는 학대의 범위를 신체적 학대, 심리적(언어적 학대 포함), 성적 학대, 방임, 경제적 학대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 5개 영역의 학대를 측정하기 위해 Conflict Tactics Scale(CTS)(Straus, 1979)을 토대로 개발된 Attendant Mistreatment Interview Schedule(AMIS)의 7문항을 활용하였다.

2. 학대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논의

1) 이용자 특성

학대에 대한 연구는 피학대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 나이, 학력, 인지능력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권중돈, 2004; 한인영 외, 2007; 김유리, 2011). 아울러 장애와 질병이 있을 경우 학대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권중돈, 2004; 한인영 외, 2007; 여진주, 2008; 김유리, 2011). 즉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타인에 대한 일상생활의 의존성이 높아질 경우 학대 발생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증 장애인들이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비장애인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또한 장애의 정도 그 중에서도 특히 신체적 기능이나 이동의 장애가 심할수록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체적 기능이나 이동의 장애가 있을 경우 학대에 대한 대처능력이 다른 장애의 경우보다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김재엽 외, 2011).

그리고 성인과 비교하여 아동의 경우 장애를 갖고 있거나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학대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유리, 2011). 아동이 신체적 질병이나 만성적 장애, 정신지체와 같

은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 양육자 혹은 돌보는 사람의 스트레스를 현저히 높여 학대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노충래, 2002; 한인영 외, 2007).

한편 개인의 심리적 상태 또한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우울 등으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낮거나 사회성이 낮은 경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거나 무기력해질 가능성이 높아 학대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권중돈, 2004; 김유리, 2011).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용자 특성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외에 건강상태, 장애특성, 심리·정서적 특성으로써 우울을 고려하고자 한다.

2) 서비스 공급의 특성

기존의 서비스 이용자의 학대에 대한 연구는 주로 생활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생활시설과 같이 지역사회와 분리되어 고립된 장소에서 생활하는 자에게 학대발생의 위험성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기존의 장애인 학대에 대한 연구도 주로 생활시설의 서비스 제공과정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심석순 외, 2010). 이는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재가서비스 이용에서 학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최근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Matthias & Benjamin, 2003). 재가서비스의 경우 이용자 선택권의 확장을 전제로 하고 있어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권력관계가 균등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학대의 위험성 또한 최소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용자의 선택권 향상이 학대의 위험성을 최소화 할 것이라는 논리는 확신되기 어렵다(Simon-Rusinowitz & Hofland, 1993).

근래 복지국가에서 비용의 절감을 위해 시설서비스가 지양되고 재가서비스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재가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생활시설에서만뿐만 아니라 자택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에도 정부가 이용자를 학대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Oktay & Tompkins, 2004; CQC, 2011). 왜냐하면 재가서비스는 서비스 설계가 이용자 위주로 이뤄질 경우가 많아 오히려 서비스 제공이 훨씬 어렵고, 종종 신체적·감정적으로 더 힘든 일, 더 즐겁지 않은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재가서비스 제공인력의 업무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것이 이용자 학대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Coyne, *et. al.*, 1993; Oktay & Tompkins, 2004).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가서비스 인력의 임금수준은 시설인력의 임금보다 낮으며, 인력의 훈련 수준과 자질은 서비스가 독립된 공간(자택)에서 제공되다보니 감독되기 더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다.

Oktay & Tompkins(2004)는 재가서비스에서 학대발생의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는 공급특성을 제시하면서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적 특성(인구사회학적 특성, 장애 특성 등)이외에 서비스 공급의 특성(서비스 제공인력의 성별, 연령,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 노동의 특성 즉 일일 서비스 제공시간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자는 재가서비스 기관과 우선적으

로 계약을 하고 기관이 파견하는 인력으로부터 서비스 지원을 받기 때문에 서비스 기관은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일차적인 책임을 갖고 있다. 즉 서비스 기관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요구나 불만에 대응하는 정도, 이용자와 기관의 협력정도, 이용자의 기관운영 참여정도 등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당한 처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장애인 학대에 대한 연구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태도 즉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장애의 특성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French(1999)는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장애의 특성과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장애아동 행동관리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학대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통해 결국 기관이 서비스 인력에 대해 적절한 훈련과 감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장애아동의 문제행동을 고의적이며 악의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처벌을 가하거나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기 쉽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김유리, 2011).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공급의 특성을 서비스 제공자인 활동보조인의 특성, 기관 내 전담인력의 특성, 기관의 특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활동보조인의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이외에 서비스 제공의 태도와 장애에 대한 이해정도를 고려하자 하며, 활동보조인의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관요인으로는 기관 내 전담인력이 활동보조인 연계 시 이용인 의사를 반영하는 정도, 활동보조인과의 갈등해결의 정도 그리고 긴급한 경우 적절한 대응의 정도를 고려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주요변수의 조작적 정의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활동지원제도 이용자의 학대경험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Conflict Tactics Scale(CTS)(Straus, 1979)를 토대로 개발된 Attendant Mistreatment Interview Schedule(AMIS) 7문항을 활동지원 제도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AMIS는 돌봄 제공자의 학대 또는 부당한 대우를 신체적 학대, 언어적 학대, 경제적 착취, 성적 학대, 방임 등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본 척도의 응답범주는 '1=예', '0=아니오'이다. 학대경험의 범위는 0점~7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이용자의 학대경험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649로 나타났다.

2) 독립변수

(1) 이용자 특성

이용자 특성은 크게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서비스 이용요인으로 나뉜다. 우선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1’, ‘여자=0’으로, 연령은 연속변수로, 학력은 ‘1=무학’, ‘6=대학원 졸업’으로, 독거여부는 ‘1=독거’, ‘0=비독거’로, 주관적 건강상태는 ‘1=매우 건강함’, ‘4=매우 건강하지 않음’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우울은 “귀하는 지난 2주 동안 우울한 감정을 느끼셨습니까?” 한 문항으로 측정하였고, 응답범주는 ‘1=거의 안 느낌’, ‘4=매우 많이 느낌’이다. 또한 장애유형은 ‘1=신체적 장애’, ‘0=정신적 장애’로, 취업여부는 ‘1=취업’, ‘0=미취업’으로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서비스 이용요인을 살펴보면, 서비스 이용시간은 현재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서비스 총 시간을 의미하며 연속변수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이용기간은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한 총 기간을 의미하며 연속변수로 측정하였다. 이 경우 2011년 10월 이전부터 활동보조서비스를 사용한 것을 모두 포함하여 이용기간을 측정하였다.

(2) 서비스 공급의 특성

서비스 공급의 특성을 활동보조인 요인, 전담인력요인 및 기관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활동보조인 요인을 살펴보면, 활동보조인 성별은 ‘1=여자’, ‘0=남자’, 활동보조인 연령은 연속변수로, 활동보조인의 서비스 제공태도는 “활동보조인은 서비스를 사려 깊게 제공한다” 한 문항으로 측정했고, 응답범주는 ‘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이다. 또한 활동보조인의 장애이해는 “활동보조인은 내 장애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 한 문항으로 측정했고, 응답범주는 ‘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이다.

다음으로, 전담인력요인을 살펴보면, 활동보조인 연계 시 이용인의 의사를 반영하는 지 정도를 “전담인력은 활동보조인을 선택할 때 나의 의사를 반영해 준다” 한 문항으로 측정했고, 응답범주는 ‘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이다. 또한 활동보조인과의 갈등을 해결해주는 정도를 “전담인력은 활동보조인과의 갈등을 적절히 해결해 준다” 한 문항으로 측정했고, 응답범주는 ‘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이다.

마지막으로, 기관요인을 살펴보면, 제공기관의 지원정도에 대해, “저녁이나 휴일에도 제공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한 경우, 제공기관은 적절한 대응을 해 준다” 두 문항으로 측정했고, 응답범주는 ‘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이다.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활동보조를 사용하고 있는 전국의 1급 등록 장애인 1000명이다. 단, 장애아동 또는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응답하기 어려운 경우, 부모, 배우자 등 대리인이 응답하였다.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에서 2012년도에 실시한 활동지원제도 실태조사 데이터를 2차 자료로

활용하였다. 원 자료는 전국의 91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수집하였다. 단, 표집 시 대상자의 연령 및 장애유형 등을 고려하여 지사 당 5~15 케이스를 할당시켰다. 조사는 공단 지사 직원에 의해 일대일 면접조사에 의해 진행되었고, 2012년 4월부터 5월 중반까지 약 40일에 걸쳐서 진행되었다¹⁾.

3. 자료분석 방법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서비스 이용특성, 서비스 공급의 특성 및 학대경험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 및 기술 분석을 실시했고, 각각의 요인이 조사대상자의 학대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되었다.

IV. 연구결과

1. 대상자 특성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성별은 남자가 541명(54.4%)로 다소 많았고, 둘째, 연령은 40대가 254명(25.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력은 고졸이 378명(38.1%)로 가장 많았고, 넷째, 독거여부는 비독거가 733명(73.7%)로 나타났다. 다섯째, 건강상태는 전체의 대략 62%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섯째, 우울은 전체의 대략 22%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지난 2주 동안에 우울감을 느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장애유형은 신체적 장애가 729명(73.3%)로 많았고, 여덟째, 취업여부는 미취업이 872명(87.3%)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서비스이용 요인을 살펴보면, 서비스 이용시간은 월평균 104.68시간으로, 서비스 이용기간은 대략 31.55개월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상자 특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1) 2013년 5월 현재,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는 전국적으로 5만 8천명 정도이며, 약 660개의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기관에 약 3만 4천명의 활동보조인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표 1> 대상자 특성

요인	변수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인구 사회학적 요인	성별	남자	541	54.4	여자	453	45.6
		연령	20세미만	122	12.3	20세~29세	138
	30세~39세		168	16.9	40세~49세	254	25.5
	50세~59세		221	22.2	60세 이상	91	9.2
	학력		무학	146	14.7	초졸	160
		중졸	146	14.7	고졸	378	38.1
		대졸	153	15.4	대학원졸	9	0.9
	독거여부	독거	262	26.3	비독거	733	73.7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지 않음	149	15.0	건강하지 않은 편임	468	47.2
		건강한 편임	343	34.6	매우 건강함	32	3.2
	우울	거의 안 느낌	425	43.8	조금 느낌	333	34.3
		많이 느낌	152	15.7	매우 많이 느낌	61	6.3
	장애유형	신체적 장애	729	73.3	정신적 장애	266	26.7
	취업여부	취업	99	12.7	미취업	872	87.3
서비스 이용요인	이용시간	평균: 104.68시간(월), 표준편차: 53.96					
	이용기간	평균: 31.55개월, 표준편차: 23.88					

2. 서비스 공급의 특성

우선 서비스 공급의 특성으로 활동보조인 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성별은 여자가 895명(89.9%)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둘째 연령은 50대가 453명(46.5%)로 거의 절반에 가까웠다. 셋째, 서비스를 사려 깊게 제공하는 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약94% 정도로 나타나 활동보조인들이 전반적으로 사려 깊게 서비스를 제공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활동보조인이 내 장애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약 93% 정도로 나타나 활동보조인들이 전반적으로 장애인의 장애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전담인력 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활동보조인을 선택할 때 나의 의사를 반영해 주는 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약 79%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장애인이 활동보조인을 선택할 때 전담인력이 장애인의 의사를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활동보조인과의 갈등을 적절히 해결해 주는 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약 81%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활동보조인과 이용인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전담인력이 잘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관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저녁이나 휴일에도 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약 46%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장애인이 저녁이나 휴일에는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긴급한 경우 기관이 적절한 대응을 해 주는 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약 64%로 나타나 긴급한 경우 기관으로부터 적절한 대응을 받는 경우가 대상자의 절반 조금 넘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서비스 공급 특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 서비스 공급의 특성

요인	변수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활동보조인 요인	활동보조인 성별	남자	100	10.1	여자	895	89.9
		20대	20	2.1	30대	55	5.6
	활동보조인 연령	40대	352	36.1	50대	453	46.5
		60대	94	9.7			
		서비스 제공태도	전혀 그렇지 않다	7	0.7	그렇지 않다	49
	장애이해정도	그렇다	573	59.1	매우 그렇다	340	35.1
전혀 그렇지 않다		6	0.6	그렇지 않다	65	6.7	
그렇다		551	56.8	매우 그렇다	348	35.9	
전담인력 요인	활동보조인 연계 시 이용인 의사반영	전혀 그렇지 않다	29	3.0	그렇지 않다	172	17.8
		그렇다	556	57.3	매우 그렇다	212	21.9
	활동보조인과의 갈등해결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28	2.9	그렇지 않다	152	15.9
		그렇다	636	66.5	매우 그렇다	140	14.6
기관요인	저녁/휴일 자원가능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134	14.0	그렇지 않다	382	39.9
		그렇다	360	37.6	매우 그렇다	81	8.5
	긴급한 경우 적절한 대응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59	6.2	그렇지 않다	278	29.4
		그렇다	513	54.2	매우 그렇다	96	10.2

3. 학대경험

대상자들의 활동보조인으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활동보조인으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활동보조인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신체적 부상이나 심리적 스트레스 등 건강상의 문제에 직면한 적이 있습니까?”와 같은 방임의 경우 69명(7.0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활동보조인이 당신에게 욕설이나 무시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까?”와 같은 언어적 폭력의 경우 24명(2.44%)로, “활동보조인이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 이외에 추가적으로 바우처 결제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와 같은 경제적 착취도 24명(2.44%)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학대경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학대경험

구분	예	아니오
활동보조인이 당신에게 욕설이나 무시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까?	24 (2.44)	959 (97.56)
활동보조인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신체적 부상이나 심리적 스트레스 등 건강상의 문제에 직면한 적이 있습니까?	69 (7.02)	914 (92.98)
활동보조인이 당신을 주먹 또는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상처를 입힌 적이 있습니까?	3 (0.30)	981 (99.70)
활동보조인이 당신의 허락 없이 당신의 돈 또는 당신의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져간 적이 있습니까?	8 (0.81)	976 (99.19)
활동보조인이 돈이나 물건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5 (0.51)	979 (99.49)

<표 3> 학대경험(계속)

구분	예	아니오
활동보조인이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 이외에 추가적으로 바우처 결제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24 (2.44)	960 (97.56)
활동보조인이 당신을 성적대상으로 느껴 만지거나 불편하게 느끼게끔 한 적이 있습니까?	3 (0.30)	981 (99.70)

4. 학대경험 영향요인 검증

활동지원제도 이용 장애인의 학대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대상자 특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서비스이용 요인을, 서비스 공급 특성의 활동보조인 요인, 전담인력 요인 및 기관요인을 동시에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학대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파악한 결과 모든 변인에서 VIF 계수가 3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²⁾.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 모델의 F값이 6.858(p<.001)로 나타나 본 모델의 적합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고, 본 모델의 독립변수들이 학대경험의 총 분산 중 13.9%(R²=.13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개별회귀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대상자 특성에서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연령($\beta = -.134, p < .01$), 학력($\beta = .070, p < .05$), 우울($\beta = .074, p < .05$), 장애유형($\beta = .147, p < .001$)이, 서비스이용 요인 중 서비스 이용시간($\beta = .125, p < .001$)가 학대경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을수록, 신체적 장애인일수록 그리고 서비스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활동보조인으로부터의 학대경험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공급 특성에서는 활동보조인 요인 중 활동보조인의 성별($\beta = -.070, p < .05$)과 활동보조인의 서비스제공 태도($\beta = -.158, p < .01$)이, 지원기관 요인 중 긴급한 경우에 대한 기관의 적절한 대응($\beta = -.122, p < .01$)이 학대경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활동보조인이 남성일수록, 활동보조인이 서비스를 사려 깊게 제공 안할수록, 제공기관에서 긴급대응을 적절히 안할수록 활동보조인으로부터의 학대경험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학대경험 영향요인 검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4>와 같다.

2) 3개 이상의 독립변수들 간의 강한 선형관계를 다중공선성이라고 하며, 심한 다중공선성은 회귀분석 결과를 왜곡시켜 특정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독자적인 효과를 측정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일반적으로 분산팽창계수(VIF) 값이 10 이상일 때는 심한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Hocking & Pendleton, 1983; 김두섭·강남준, 2000에서 재인용).

<표 4> 학대경험 영향요인 회귀분석 결과

특성	요인	변수	비표준화계수 (B)	표준화계수 (β)	t
대상자 특성	인구사회학적 요인	성별	-.051	-.055	-1.582
		연령	-.004	-.134	-3.113**
		학력	.025	.070	1.969*
		독거여부	-.047	-.044	-1.178
		건강상태	-.009	-.014	-.386
		우울	.035	.074	2.100*
		장애유형	.159	.147	3.485***
		취업여부	.002	.002	.044
	서비스 이용요인	이용시간	.001	.125	3.276***
		이용기간	.000	-.020	-.549
공급 특성	활동보조인 요인	활동보조인 성별	-.119	-.070	-1.967*
		활동보조인 연령	-.009	-.015	-.415
		서비스 제공태도	-.127	-.158	-3.072**
		장애이해	-.030	-.038	-.747
	전담인력 요인	이용인 의사반영	.002	.002	.056
		갈등해결	-.015	-.020	-.480
	기관 요인	저녁/휴일 지원	-.003	-.007	-.201
		긴급 시 대응	-.078	-.122	-3.083**
상수			.935***		
R2			.139		
F			6.858***		

※ * p<.05, ** p<.01, *** p<.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활동지원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활동보조인으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정도와 그리고 이와 같은 학대경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이용자 특성과 서비스 공급의 특성으로 구분 및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장애인을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실천적, 정책적 개입 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에서 2012년도에 실시한 활동지원제도 실태조사 데이터를 2차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및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의 학대경험 정도는 매우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학대영역에서 3% 미만의 학대 경험율을 보였다. 하지만, 학대영역 중 방임에 해당하는, 활동보조인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신체적 부상이나 심리적 스트레스 등 건강상의 문제에 직면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전체의 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대부분의 활동지원 서비스가 독립된 또는 폐쇄된 주거공간에서 활동보조인과 장애인 둘만 있을 때 제공되는데,

비장애인에 비해 권리주장의식이 전반적으로 약한 장애인의 경우 이와 같은 방임형 학대에 대해 활동보조인을 상대로 또는 전담인력을 상대로 문제제기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용자 교육일 것이다. 그 동안 많은 연구에서 이용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었지만(보건복지부, 2008; 2009; 2012), 아직까지 기관차원에서의 이용자 교육은 서비스 이용원칙, 결제방식 등에 대해 형식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향후 이용자 교육이 좀 더 내실화될 수 있도록, 기관에서의 이용자교육을 의무화시킴과 동시에 이용자 교육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국가지원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학대경험 정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활동보조인으로부터 방임을 당하지 않은 93%의 이용자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 명의 장애인도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의 학대라도 경험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먼저 이와 같은 방임형 학대를 포함한 학대행위가 어떤 이유로 그리고 어떤 정도로 발생하고 있는 지에 대해 정밀한 연구가 수반되어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위의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활동보조인에 의한 학대정도가 매우 미비한 것은 매우 다행스런 결과이다. 하지만 단 한 명의 장애인이라도 활동지원 제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활동보조인으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이며, 국가와 지방정부 그리고 기관에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현재 우리나라에는 현행 전자우편 관리시스템으로 진행되는 활동지원제도에 대한 공적인 관리시스템이 부재하다. 따라서 조속히 서비스 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그나마 일정부분 서비스 질 관리차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의 학대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대상자 특성에서는 연령, 학력, 우울, 장애유형, 서비스 이용시간이 학대경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을수록, 신체적 장애인일수록 그리고 서비스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활동보조인으로부터의 학대경험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연령의 경우, 활동보조인의 연령이 대부분 40-50대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연령이 낮을수록 연령의 차이가 커져 보다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특히 성인장애인보다 아동장애인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또한, 학력이 높은 장애인의 경우 학력이 낮은 장애인보다 학대경험이 좀 더 높은 것은 학력이 높은 장애인의 경우 학대에 대한 문제의식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즉, 학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으로부터 학대를 당했어도 그것이 학대인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력이 높은 장애인일수록 학대경험이 높아진다는 것은 후속연구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그 인과성을 밝힐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울감이 높은 장애인일수록 학대경험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우울감이 높은 장애인일수록 자존감이 낮고 무기력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권중돈, 2004; 김유리, 2011),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기관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현행 기관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는 1년에 1회 정도 정기적으로 방문 또는 전화로 이용자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즉, 서비스 만족도, 서비스 이용과정에서의 어려움, 기타 욕구 등에 대해 1년에 1회 정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위의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이용자의 심리적 특성이 학대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 기관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이용자 관리차원에서 자존감이 낮거나 우울성향이 강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민간자원에 연계 및 의뢰하여 이에 대한 개입을 요청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접근이 현재 공적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현실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다. 또한, 신체적 장애인일수록 학대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체적 기능이나 이동이 상대적으로 힘든 장애인일수록 학대 발생 시 대처능력이 떨어지거나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셋째, 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의 학대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공급 특성에서는 활동보조인의 성별, 활동보조인의 서비스제공 태도, 긴급한 경우에 대한 기관의 적절한 대응이 학대경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활동보조인이 남성일수록, 활동보조인이 서비스를 사려 깊게 제공 안할수록, 제공기관에서 긴급대응을 적절히 안 할수록 활동보조인으로부터의 학대경험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남성 활동보조인이 여성 활동보조인보다 상대적으로 장애인을 더 많이 학대한다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여자에 비해 남성이 전반적으로 공격성에 대한 통제력이 낮을 뿐만 아니라, 권위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장애인의 요구대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모습도 쉽게 발견될 것으로 예측된다. 두 번째로, 활동보조인이 서비스를 사려 깊게 제공하지 않을수록 장애인의 학대경험이 높아지는 것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활동보조인이 장애인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서비스를 불성실·불친절하게 제공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활동보조인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 현재 활동보조인의 보수교육은 전적으로 기관에게 일임되어 있고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관 입장에서는 어떤 교육내용을 가지고, 어떤 강사를 초빙하여, 어떤 재원으로 활동보조인을 보수교육시킬지 매우 난감한 현실이다. 따라서 향후 활동보조인에 대한 보수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함께 강사 인력 풀(pool) 구성 및 표준화된 교재 개발·보급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기관에서 긴급한 경우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을수록 학대경험이 높아지는 것은 그 만큼 학대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장애인에 대한 신속한 문제개입 및 해결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은 장애인의 긴급한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전담인력과 활동보조인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부분 기관의 경우

전담인력 인건비를 활동지원제도 중계수수료를 통해 충당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전담인력만 고용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향후 국가에서는 관리하는 장애인 및 활동보조인 인원 대비 전담인력의 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이와 같은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 현재 활동지원 제공기관의 경우 전적으로 바우처 수수료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제공기관입장에서는 충분한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처럼 일정부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활동보조인의 확보의 경우도 제공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활동지원제도 서비스 단가가 가사·간병서비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과 같은 기존 유사 돌봄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원활한 활동보조인 인력수급을 위해 서비스 단가도 기존 유사 돌봄 서비스 수준으로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활동지원 제도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학대경험 실태 및 영향요인에 대해 탐색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가 2차 자료이기 때문에 학대경험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다양한 변수들(이용인의 사회적 네트워크 정도, 활동보조인의 심리적 특성, 전담인력의 업무관련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의 내용을 심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신욱, 강혜규, 김태완, 원종욱, 장영식, 정홍원, 최현수, 주영선. 2012. 개정 사회보장기본법 시행 과제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혜규, 유태균, 박수지, 정홍원, 이선희. 2012. 사회복지서비스부문 바우처사업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 국무총리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3. 사회안전 저해범죄 대처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권중돈. 2004. 노인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4(1): 1-19.
- 김경미. 2007. 활동보조서비스의 제도화 방안: 미국의 활동보조서비스와 한국에서의 제도화 모색. 사회복지정책. 29: 195-216.
- 김경미, 김동기. 2010.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제도 평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제 116회 월례학술세미나 발표자료.
- 김두섭, 강남준. 2000. 회귀분석: 기초와 응용. 서울: 나남출판.
- 김미혜. 2001. 노인학대의 이해와 해결을 위한 첫걸음. 까리따스방배종합사회복지관 노인학대 세미나 자료집.

- 김성희, 변용찬, 이송희, 조홍식, 김찬우, 이승기, 석재은. 2011.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정책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유리. 2010. 장애아동 학대의 원인과 학교의 예방적 역할. 특수교육. 9(3): 71-89.
- 김재엽, 이병화, 윤여원. 2011. 신체적 장애인의 아동기 폭력경험과 성인기 가정폭력과의 관계 연구: 법 인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8(6): 201-225.
- 김재엽, 이지현, 송향주. 2009. 아내폭력 피해여성의 자녀학대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0(4): 323-348.
- 배화숙. 2007.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바우처제도 도입의 의미와 과제. 사회복지정책. 31(2): 319-342.
- 백경숙. 2011.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태도와 결혼만족도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16(2): 181-198.
- 보건복지부. 2008.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발전방안 연구. 서울: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보건복지부. 2009.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이용 및 공급실태 조사연구. 서울: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보건복지부. 2012. 장애유형, 연령 및 생활환경 등에 따른 급여 이용실태 조사 연구. 서울: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2. 4. 18. 장애인정책의 현실과 정책방향. 장애인정책과.
- 송재숙, 정중화. 2009.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별 만족도 비교 연구. 재활복지. 13(1): 187-213.
- 심석순, 최영, 오윤진. 2010. 생활시설에서의 학대피해경험이 장애인의 자아존중감과 퇴소 후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 재활복지. 14(4): 303-328.
- 정중화. 2006. 한국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 방안 연구. 한국사회복지학체계 학술대회 자료집.
- 여진주. 2008. 아동학대 발생요인에 대한 생태학적 분석: 경상북도 동부권 아동을 대상으로. 보건사회연구 28(1): 3-26.
- 유한옥. 2006. 바우처 제도 국내외 사례 및 개선방안.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윤상용, 최미영. 2006. 외국의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도 현황과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 이경은, 박영준, 김도희. 2009. 노인의 학대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인과모형 연구. 한국노년학. 29(3): 883-898.
- 이은희. 2004. 치매노인 학대요인에 관한 연구: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4(3): 91-110.
- 이익섭 외. 2009.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이용 및 공급실태 조사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보건복지부.
- 한인영, 이용우, 유서구, 박명숙, 김주현. 2007. 아동 신체학대 발생의 영향요인: 한부모 가구와 가족기능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21(4): 187-216.
- Belsky, J. 1993. Etiology of Child Maltreatment: A Developmental Ecological Analysis.

- Psychological Bulletin*. 114(3): 413-434.
- Cambridge, P. 1999. The First Hit: A Case Study of the Physical abuse of People with Learning Disabilities and Challenging Behaviors in a Residential Service. *Disability & Society*. 14(3): 285-308.
- Care Quality Commission. 2011.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10/2011*.
- Care Quality Commission. 2010. *Guidance about Compliance: Essential Standards of Quality and Safety*.
- Cooney, C. and R. Howard. 1995. Abuse of Patients with Dementia by Carers.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10: 735-741.
- Coyne, A. C., W. E. Reichman, and L. J. Berbig. 1993. The Relationship between Dementia and Elder Abus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0: 643-646.
- Donovan, R., P. A. Kurzman, and C. Rotman. 1993. Improving the Lives of Home Care Workers: A Partnership of Social Work and Labor. *Social Work*. 38: 579-585.
- Godkin, M. A., R. S. Wolf, and K. A. Pilemer. 1989. A Case-comparison Analysis of Elder Abuse and Neglect.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 Human Development*. 28: 207-225.
- Jones, J. S., C. Holstege, and H. Holstege. 1997. Elder Abuse and Neglect. *American Journal of Emergency Medicine*. 16: 579-583.
- Hockinga, R. R. and O. J. Pendletonb. 1983. The Regression Dilemma. *Communications in Statistics: Theory and Methods*. 12(5). 497-527.
- Kleinschmidt, K. C. 1997. Elder Abuse. *A Review Annals of Emergency Medicine*. 30: 436-472.
- Matthias, R. E. and A. E. Benjamin. 2003. Abuse and Neglect of Clients in Agency-based and Consumer Directed Home Care. *Health & Social Work*. 28(3): 174-184.
- Oktay, J. S. and C. J. Tompkins. 2004. Personal Assistance Providers' Mistreatment of Disabled Adults. *Health & Social Work*. 29(3): 177-188.
- Simon-Rusinowitz, L. and B. F. Hofland. 1993. Adopting a Disability Approach to Home Care Services for Older Adults. *Gerontologist*. 33: 167-169.
- Williams, C. 2007. *World Report on Violence and Health*. Working Paper.

金東基: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논문으로는 “한국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개념화 연구(2012)”, “장애인용 사회적배제 척도개발 연구(2013)” 등이 있으며, 관심분야는 장애인 자립생활, 활동지원제도, 거주시설 인권, 사회적 배제이다(aslikeme@hanmail.net).

朴秀智: 독일 유스투스-리비히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 연구센터에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로는 “복지국가의 사회서비스 제도와 및 재구조화에 대한 고찰(2009)”,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연계동향 및 정책방향(2012)” 등이 있으며, 관심분야는 사회서비스 정책, 품질 관리, 장애인서비스, 사회적 기업이다(rolu75@hotmail.com).

투 고 일: 2013년 08월 27일

수 정 일: 2013년 11월 18일

게재확정일: 2013년 11월 24일

A Exploratory Study on Safety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at Home
– Focused on Mistreatment Experiences of Severe Disabled–

Dong Ki Kim, Su Sie Park

This study analyze a influence of service agency and service consumer characteristics, on the essential standard "safety from mistreatment", in a provision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 for disabled. For this purpose is used as a secondary date 「A survey on personal assistance service for disabled」, which is investigated by Ministry of Health and Human Service in 2012. As a results is founded influences of the following, also age, education, physical disability and depression, as service consumers characteristics. On the service provision side, the followings affect on "safety of service consumer from mistreatment", also, thoughtful attitude and gender of service provider, service hours and adequately answer the emergency call, as service agency characteristics. Finally, it suggests a regular monitering of service, reinforcement of education for service provider, improvement of service price, presentation of personal size as implications for a attainment to security of "safety from mistreatment" in a provision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 for disabled.

Key words: severe disabled, abuse experience, personal assistance service for disabled, insurance of safety service